

1. 개정이유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23.3.28)」에 따라, 자녀를 출산하는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요건을 완화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책발표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자산요건을 완화(자녀 1인당 10%p, 최대 20%p)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고시안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고시 시행 이후 재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3.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별표] 공공주택의 종류 및 자격별 자산기준

공공주택 종류 및 자격	적용유형	부동산가액 및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 공공분양주택 중 특별공급(세대 기준)	1)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를 포함 하며 미성년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	부동산가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 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 평균한 금액의 110% 이하(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0%)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 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0% 이하(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0% 이하이며,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 공공분양주택 중 전용면적 60㎡이하 일반공급 (세대 기준)	2) 1)의 기구중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부동산가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의 120% 이하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 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20%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 5년 또는 10년인 유형 (세대 기준)	3)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가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 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하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 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 장기전세주택(세대 기준)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세대 기준)	1)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140% 이하(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50% 이하이며,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
	2) 1)의 기구중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150%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	-

		올림 한다)	
	<u>3)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u>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130%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한다)	-
·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중 일반공급,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세대 기준), 임대의무 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세대기 준, 단, 청년 특별공급 은 제외)	<u>1)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u>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115% 이하(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5% 이하이며,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한다)	-
	<u>2) 1)의 가구중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u>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125%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한다)	-
	<u>3)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u>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105%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한다)	-
·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청년 특별공급(본인 기준 및 부모 기준 모두 충족)	<u>1)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u>	본인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90% 이하(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00% 이하이며,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이고 부모의 총자산가액이 소득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30%이하(2가지 조건 모두 충족)	-
	<u>2) 1)의 가구중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u>	본인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	-

		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100%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이고 부모의 총자산가액이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300%이하(2가지 조건 모두 충족)	
	3)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80%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이고 부모의 총자산가액이 소득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300%이하(2가지 조건 모두 충족)	-
•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세대 기준)	1)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115% 이하(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5% 이하이며,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
	2) 1)의 가구중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125%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
	3)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105%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
• 통합 공공임대주택[세대 기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기준, 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의2 제1호	1)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110% 이하(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0% 이하(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0% 이하(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나목1), 제2호나목8)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본인 기준]		상인 경우 120% 이하이며,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이상인 경우 120% 이하이며,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2) 1)의 가구중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 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120%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20%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3)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 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임대주택(세대 기준) •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고령자, 산단근로자(세대 기준) •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혼인 중인 경우는 세대 기준, 혼인을 계획 중인 경우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기준) 	1)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 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110% 이하(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0% 이하이며,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10% 이하(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0% 이하이며,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2) 1)의 가구중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 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120%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20%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3)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 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청년(세대 기준, 단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본인 기준)	1)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30~39세 가구의 순자산 평균값의 110% 이하(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0% 이하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10% 이하(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0% 이하

		<u>이며,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u>	<u>며,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u>
	<u>2) 1)의 가구중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u>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30~39세 가구의 순자산 평균값의 120%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20%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u>3)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u>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30~39세 가구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p>•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대학생(본인 기준)</p>	<u>1)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u>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30세 미만 가구의 순자산 평균값의 110% 이하(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0% 이하 <u>이며,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u>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u>2) 1)의 가구중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u>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30세 미만 가구의 순자산 평균값의 120%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u>3)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u>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30세 미만 가구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p>• 영구임대주택 중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의 나목, 마목, 바목, 아목, 차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 기준)</p>	<u>1)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u>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2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10% 이하(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0% 이하 <u>이며,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u>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0% 이하(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0% 이하이며,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u>2) 1)의 가구중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u>	총 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2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120%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20%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u>3)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u>	총 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2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주) 부동산가액 산출시 본인 기준인 경우는 공공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과 토지의 건축물가액과 토지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세대 기준인 경우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과 토지의 건축물가액과 토지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